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2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김승수・임이자・우재준

성일종 · 박충권 · 주호영

김위상 · 김성원 · 박성민

강선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, 영화진흥위원회의 전체 위원(9명) 중영화업자의 수는 최대 2명까지로 제한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 등 영화산업의 환경이급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, 영화제작·수입·배급·상영 등 영화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유한 인사가 보다 활발하게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인원 제한 등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영화업자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정들을 정비하되, 위원 면직 사유에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였거나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을 위반하여 벌칙 등을 받은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영화진흥

위원회의 현장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2항 단서 삭제, 제12조제5호 삭제,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5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2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·의결에 관여한 경우
- 4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. 다만, 같은 법 제28조제3항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제17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 면직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3조제2항제3 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한 심의·의결에 관 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) ①	제8조(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	②
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	
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	
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	
관이 임명하되, 성(性)과 연령,	
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	
여 구성하여야 한다. <u>다만, 위</u>	<u><단서</u>
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	<u>삭제></u>
함되어서는 아니 된다.	
③・④ (생 략)	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위원의 결격사유) 다음 각	제12조(위원의 결격사유)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	
람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이	
될 수 없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	<u><삭 제></u>
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	
<u>비디오물영업자</u>	
6. (생 략)	6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	제13조(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
분보장) ① (생 략)	분보장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	2
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7조(소위원회 등) ① (생 략)

② 영화업자에 해당하는 영화 진흥위원회 위원은 제2조제9호 각 목에 따른 분류 중 스스로 가 업으로 하고 있는 분야와 직접 관련되는 소위원회의 위 원이 될 수 없다.

③ (생 략)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본인 또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이해 와 관련있는 사항에 관한 심 의・의결에 관여한 경우
- 4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」을 위반하여 같은 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. 다만, 같은 법 제2 8조제3항에 해당하여 과태료 를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 다.

제17조(소위원회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<u><</u>삭 제>

③ (현행과 같음)